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01397-14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8호 2016. 6. 30.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8호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최지현(금융공정거래팀)

2016. 6. 30.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제 선정 | 2016. 2. 24. |
| 초고 작성기간 | 2016. 5. 16. ~ 2016. 6. 7. |
| 팀 검토 및 수정 | 팀 독회 2016년 6월 10일 10:00 ~ 11:00<br>- 검토: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br>홍정아 입법조사관<br>원종현 입법조사관<br>수정일 2016. 6.10. ~ 6.13. |
| 실무위원회 검토 | 2016년 6월 16일 오후 3시(경제산업조사실장실)<br>- 실무위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br>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br>김대은 재정경제팀장<br>김봉주 산업자원팀장<br>이수기 국토해양팀장 |
| 외부전문가 자문 | 1. 전문가: 한재준 교수(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br>2. 요청일: 2016년 6월 17일<br>3. 답변일: 2016년 6월 22일 |
|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 2016년 6월 30일 오후 4시<br>-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br>- 위 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br>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br>박출해 기획관리관<br>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 |

# 요 약

□ 분석대상 법률조항의 개관

○ 본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임

○ 이 법률조항들은 각각 2014.3.18., 2014.10.15.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대부업법」은 2014.9.19.,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음

○ 이 법률조항에 따라 도입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통한 전화번호 중지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이용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 이용금액이 제도 시행 전보다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서민들의 자금수요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 스팸메일 및 전화, 생활정보지 등 전화번호를 이용한 경우가 불법대부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로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킴으로써 불법대부업과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번호가 재개설되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한 제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명의인에 대한 정보는 통신비밀로 보호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90일간 이루어지는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지조치를 통신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중지와 관련된 통신사의 약관을 법문의 취지와 같이 의무사항으로 정비하며, 이용자 보호에는 다소 짧은 중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장하되 그 하한을 법령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미디어환경(통신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전화번호가 중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다른 번호를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의 상한에 따른 제한도 크지 않음

- 현재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를 약관상 전화이용신청이 제한되거나 승낙되지 않는 사유에 포함시키는 통신사는 일부에 해당하며, 포함하고 있더라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유로 두고 있음

- 또한, 약관에서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우량고객의 경우에는 추가 개통이 가능하여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를 이용신청 제한이나 승낙거부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개설가능 번호 개수 제한과 더불어 일정 횟수 이상 개설하는 자에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번호 개설 간 시간적 간격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전화번호 명의인이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중지조치 전에 먼저 알고 번호이동을 하게 된 경우, 이동된 번호에 대해서는 중지조치를 할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이동 전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번호이동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지조치를 받은 명의인을 추적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 보호의 제한을 받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조치 전에 번호이동이 되었더라도 기존 통신사가 중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동된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명의인에 관한 인적사항 정보를 통신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지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사항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비밀 사항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어 중지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조문이지만, 이로 인해 불법대부업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명의인이 전화번호 중지기간 이후 동일 번호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지조치 전 번호이동 후에 다시 중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이용자(명의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로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적다고 하였음

-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다만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권한 없는 기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 간에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규제의 신설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킴으로써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되는 수단을 제한하고 해당 수단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신설된 것임

○ 동 규제로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겠으나, 그 밖에도 지인 소개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화번호가 중지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구제는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사후적 구제가 전부임

○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중지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결론

○ 현재 시행 중인 전화번호 중지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대부업에 접근하게 되는 수단을 차단시킴으로써, 불법대부업 이용자를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차 례

□ 요약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 1

1. 분석대상 법률 ····· 1
2. 입법 배경 및 이유 ····· 3
3. 심의 경과 ····· 4
4. 입법의 주요 내용 ····· 8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 9

1. 법체계적 분석 ····· 9
2. 정치·행정 영향분석 ····· 10
3. 경제·산업 영향분석 ····· 11
4. 사회·문화 영향분석 ····· 13
5. 규제영향분석 ····· 14
6. 부패영향분석 ····· 15
7. 기타 영향 분석 ····· 15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 16

Ⅳ. 입법영향분석 / 21

1. 법체계적 분석 ····· 26
2. 정치·행정 영향분석 ····· 26

3. 경제·산업 영향분석 ····· 26
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26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35
4. 사회·문화 영향분석 ····· 40
가. 미디어환경(통신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40
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49
5. 규제영향분석: 규제의 신설 ····· 59
6. 부패영향분석 ····· 62
7. 기타 영향분석 ····· 62

Ⅴ. 결론 / 63

□ 참고문헌

# 표 차 례

[표 1] 불법대부광고 관련 조문 ····· 21
[표 2] 기존 전화번호 중지절차 ····· 23
[표 3] 법 시행 이후 월별 불법대부광고 접수 건수(~2016.4.30.) ····· 26
[표 4] 시민감시단 활동내역 ····· 27
[표 5] 법 시행 이후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2016.4.30.) ····· 28
[표 6] 불법대부업 이용 현황 ····· 30
[표 7] 불법대부업 이용 시기(복수응답) ····· 31
[표 8] 등록 대부업체 이용규모 추이(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반기별) ····· 34
[표 9] 불법대부업자를 알게 된 경로(2014년 7월~8월) ····· 35
[표 10] 전화번호 이용 중복중지 현황 ····· 36
[표 11] 각 통신사별 이용중지 관련 약관 내용 ····· 38
[표 12] 각 통신사별 약관 중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관련 내용 ····· 41
[표 13] KAIT의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 범위 ····· 45
[표 14] 제19대 국회에서의「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개정 관련 법률안 ···· 56
[표 15] 최근 3년간 번호중지 처리 건수 ····· 61

# 그 림 차 례

[그림 1]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제도 절차 개요 ····· 24
[그림 2] 현행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 24
[그림 3] 은행의 대출 추이(분기별) ····· 32
[그림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추이(분기별) ····· 33
[그림 5] 불법스팸정보 공유 절차 ····· 46

#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 1. 분석대상 법률

| |
|---|
| **법률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 **법률 조항번호 및 제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 **법률(조항) 시행일:** 2014. 9. 19. / 2014. 10. 15. |
| **해당 법률 조항:**<br>「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br>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br>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br>「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br>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 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입법 배경 및 이유

최근 수년간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 왔음

한편,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행위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특히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급증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경찰청에서는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가 중지되기까지 기간 소요가 불가피했음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부 이용자가 미등록 대부업 또는 허위·과장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미등록 대부광고 및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

그 결과 시·도지사 등의 기관이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그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무분별한 번호 이용 중지와 그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번호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3. 심의 경과

가 법안 발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대 국회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약칭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2012년 7월 6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540)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12년 12월 27일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33)은 시·도지사가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1]에 정지 요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전화번호 중지 관련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2012년 9월 10일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675)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중지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13년 12월 31일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939)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이나 스팸과 같은 범죄행

1) 2013.3.23.「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

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의 차단여부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나.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

(1)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1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2.8.23.)에 상정되어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9.17.)에서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2012년 12월 27일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3.4.1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위 법률안들에 대해 미등록대부업자는 아예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광고규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렇다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외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것인지, 광고수단이 대포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통신서비스 중지에 큰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개정 내용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예방은 아니더라도 시작단계의 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여 논의가 마무리되었음[2)]

제3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2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3)]

2)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14.2.24., pp.30~33.

3)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2014.2.25., p.3.

2014년 2월 25일 제322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4)]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0일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6.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2013년 12월 31일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4.)에 상정되어,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8.)에서 제안설명·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됨

위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범위 한정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다른 법률(「대부업법」)에서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한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만 번호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권한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정리되었음[5)]

제3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4.4.30.)에서 위 각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6)]

4)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제6호, 2014.2.25., p.2.
5) 국회사무처, 「제324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제1호, 2014.4.30., pp.21~22.
6) 국회사무처, 「제324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제1호, 2014.4.30., p.25.

다. 본회의 의결

(1) 「대부업법」

2014년 2월 28일 제322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안(대안)이 원안의 결됨(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7)]

(2) 「전기통신사업법」

2014년 9월 30일 제3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안(대안)이 원안의 결됨(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8)]

7) 국회사무처,『제322회국회 본회의 회의록』제10호, 2014.2.28., pp.11~12.
8) 국회사무처, 「제329회국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2014.9.30., pp.14~15.

## 4. 입법의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ⅰ)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ⅱ) 필수 대부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하여 이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대부업법」 제9조의6제1항, 제2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중지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중지 전에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함(「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2항)
4.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대부업법」 제9조의6제3항)

#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 1. 법체계적 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법률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제법(조약·협정 등 포함)과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불명확한 요소**가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법문에 애매모호하거나 집행자·수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는가? | □ | |

## 2. 정치 · 행정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헌법기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회의 기능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정당이나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선거와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형사제도·형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인권수준과 관련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적제도와 출입국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남북관계·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정부조직·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재난·재해 등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치안 및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3. 경제 · 산업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조세 및 기타 공과금**(세금, 부담금, 사회보험금 그 밖의 공과금의 인상 또는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무역, 투자흐름, 산업입지로서의 장단점, 특정 상품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우리나라의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내적으로 **소득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금융·외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26 |
| 이 법률(조항)이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35 |
| 이 법률(조항)이 **에너지·자원의 수급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지역간(특히 도시/농어촌,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특정한 **산업(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농산어촌이나 농림축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토계획·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토지·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교통(육상, 항공, 해운) 및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하경제(shadow economy)**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후속 세대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 □ | |

## 4. 사회 · 문화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문화에 대한 접근, 향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체육·관광, 국민의 여가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건강(질병,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아동·청년·고령자·장애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위에서 언급한 사회집단 이외에 **특정 집단 또는 계층(특히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식품·의약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회적 불평등(차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적 영역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과학·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연구개발(R&D) 활동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미디어환경(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40 |
| 이 법률(조항)이 **(개인) 정보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49 |
| 이 법률(조항)이 **노동권,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유전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5. 규제영향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59 |
| 이 법률(조항)에 의해 신설·강화된 **규제의 비용이 규제의 편익을 초과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나 편익이 특정한 집단에 과도하게 편중**되는가? | □ | |

## 6. 부패영향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의 **집행기준(재량규정, 위임위탁기준, 재정지원) 등에 적정성**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으로 규정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 □ | |

## 7. 기타 영향 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의식, 사회적 관습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집단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영향 가운데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영향**이 있는가? | □ | |

#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2016.6.13. 의견조회 |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는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부 이용자가 미등록 대부업 또는 허위·과장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불법대부광고를 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음<br>○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상담·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건수가 소폭 감소('15.1~5월 57,102건 → '16.1~5월 46,295건)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대부금융협회의 설문조사 표본수가 매년 500명 미만(최저 196명)이므로 이를 통해 전반적인 불법사금융 증감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br>○ 또한, '14.2월 제도도입 이후 등록대부업체의 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거래자수 및 대출금액은 매년 소폭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불법사금융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 없이 서민·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현재 금감원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중지 전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불법대부광고 관련 사실확인 및 이용중지 조치에 대한 사전 고지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2016.6.17. 의견조회 | ○ 이전 명의자(불법 사채업자)는 해지된 전화번호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에 해지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을 원하겠으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사용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떨어질 것임. 또한 통상적으로 불법대부업자(사채업자)는 전단지를 여러 장소에 다량 배포하기에 시간차를 두고 동일 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명의인 및 지인을 통한 재사용은 단정할 수 없음. 중복 요청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 | | 사례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한편,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보호기간 연장 및 이전 명의자의 가입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에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br>○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개월인 전화번호 중지기간을 향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토 중임<br>○ 약관이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약관의 해당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재정비를 검토하겠음. 다만, 약관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무적으로 중지 처리하고 있고, 현행 약관의 체계 및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 중지기간을 규정할 경우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관리 및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에 제약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새로운 이용신청을 제한하거나 승낙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명의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음<br>○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환경 및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될 때 개통을 엄격히 하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br>○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확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명의인의 정보를 수사기관, 시.도지사, 금융감독원, 미래창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 | | 조과학부에서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함<br>○ 번호변경(번호만 변경 및 통신사변경 후 번호변경) 등의 경우에는 명확히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안내를 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 검토 중임<br>○ 선의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불법사용 전화번호 중지시스템을 통해 전기통신역무 제한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불법행위 적발시점과 통신서비스 가입시점 등을 비교하여 반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또한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통신사에 해제 명령을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br>○ (종합) 현행 제도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구분 등 구체적인 분석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겠음.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 대포통장 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신속히 전화번호의 중지 및 사후 점검 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인력확대가 필수적임 |
| 관련 기관 | 금융 감독원 | 2016.6.13. 의견조회 | ○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br>*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전화번호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 | | 이용중지<br>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소유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안내 및 문자메시지로 전화소유자에게 중지 사실 사전고지<br>* 통화 1회 시도 및 문자 2회 전송<br>②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후 이용자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즉시해제<br>* 대부업 등록증, 불법대부광고 제보접수일 이후 신규 전화번호 가입이 증명되는 전화가입확인서, 타직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br>○ 현재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이나 이용중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중) |
| 이해관계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 2016.6.9. 의견조회 |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특히 무등록대부업자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일시적인 이용중지가 아닌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명의자의 신규 이용신청 제한(모든 통신사 공통 적용)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인 이용중지의 경우 중지기간 이후 재사용 또는 이용정지 회피를 위한 통신사 변경(번호 이동) 등을 통해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해당 전화번호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해당 번호를 더 이상 불법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br>○ 90일간의 중지기간 연장보다는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불법대부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br>○ 불법대부업자의 대부광고행위는 「대부업법」상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도구(수단)에 해당함. 따라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 | |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볼 수 있음. 이에 적극적으로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에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행위 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전화번호 이용정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이용계약 해지가 아닌 중지기간을 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중지기간의 하한을 규정하여 불법대부업자의 영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br>○ 대부분이 소위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대포폰 제공자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 이용계약 신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함<br>○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자에 대하여는 '신규 이용계약 제한 조치' 등을 통신사 공통으로 시행해야 함. 이를 위해 불법대부광고 관련 명의자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br>○ 적극적으로 불법대부업자로 인한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계약 해지 규정, 불법대부광고물을 인쇄·배포하는 등 불법대부업 또는 불법대부광고를 도와주는 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여 불법대부업자의 영업 및 불법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 Ⅳ.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불법대부광고는 다음 종류의 광고를 말함

-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대부업),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대부업법」 제9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할 경우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대부업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표 1] 불법대부광고 관련 조문

| |
|---|
|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br>① (생략)<br>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br>2. 대부업 등록번호<br>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br>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br>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하는 광고를 발견한 경우 및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중단을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2014년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였음[9)]

○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에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 전화번호가 차단되기까지는 최소한 경찰청의 수사기간 상당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음

**[표 2] 기존 전화번호 중지절차**

| |
|---|
| (금감원) 불법 광고 인지 및 신고 → (경찰) 불법여부 판단 및 이동통신사에 중지 요청 → (이동통신사) 경찰 중지요청 시 해당번호 중지 |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4.1.26.

○ 이에 국무총리 주재로 2014.1.26.에 개최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불법대부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및 '판단 근거'를 적시하여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이 지체 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전화번호 차단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킴

9) 금융위원회,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4.1.26.

[그림 1]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제도 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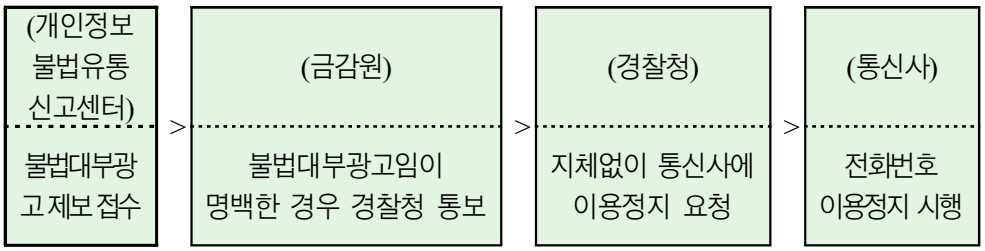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4.1.26.

□ 이후 「대부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직접 이용중지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2] 현행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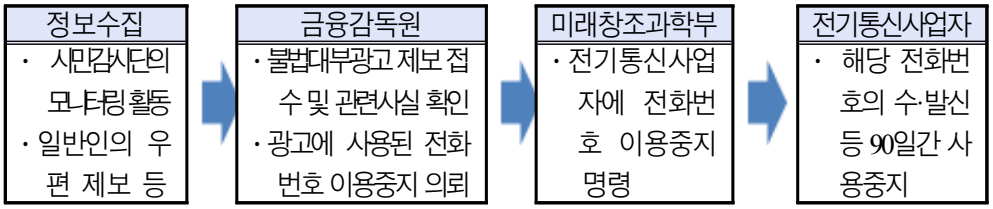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보도자료, 2016.4.5.

□ 현재 시행 중인 전화번호 중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접근매체·대포통장 거래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전기통신사업법」이 2016.1.27. 개정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대상에 기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이 포함되었으며, 2016.7.28. 시행 예정임

○ 불법대부광고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대포통장 등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차적이고 가장 빈번한 수단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차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피해예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포함될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가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1. 법체계적 분석

(해당사항 없음)

## 2. 정치 · 행정 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3. 경제 · 산업 영향분석

### 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1) 불법대부광고 접수 및 전화번호 중지 현황

□ 금융당국은 불법대부업을 근절하고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시민감시단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음

○ 월 평균 접수 건수가 2014년의 경우 2815.5건, 2015년 7273.75건, 2016년 9387.75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법 시행 이후 월별 불법대부광고 접수 건수(~2016.4.30.)

(단위: 건)

| 월별/연도 | 2014 | 2015 | 2016 |
|---|---|---|---|
| 1월 | - | 1,506 | 4,233 |
| 2월 | - | 1,182 | 2,538 |
| 3월 | - | 4,341 | 14,318 |
| 4월 | - | 4,398 | 16,462 |
| 5월 | - | 4.008 | |
| 6월 | - | 5,011 | |
| 7월 | - | 4,165 | |

| 월별/연도 | 2014 | 2015 | 2016 |
|---|---|---|---|
| 8월 | - | 6,222 | |
| 9월 | - | 15,053 | |
| 10월 | 4,332 | 13,265 | |
| 11월 | 3,749 | 14,097 | |
| 12월 | 3,205 | 14,037 | |
| 합계 | 11,286 | 87,285 | 37,551 |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대부광고 접수 건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7.

○ 2015년의 경우 9월부터 접수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특히 시민감시단 인원이 확대되면서 접수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시민감시단은 소비자보호 및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2.7.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으로 처음 발족되어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와 불법대부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제보함
- 2015년 8월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대부광고, 통장매매, 신용카드깡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보함

[표 4] 시민감시단 활동내역

|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
| 활동 인원 | 130명 | 55명 | 50명 | 200명 |
| 활동 시기 | 2014.2.7.~7.31. | 2014.8.1.~12.31. | 2015.2.18.~7.17. | 2015.8.1.~12.31. |

주: 5기는 2016.2.15.~11.14. 동안 활동 중이며, 200명으로 시작되었다가 6월 말부터 300명이 추가됨

자료: 금융감독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전국 방방곡곡에서 눈부신 활약!」 보도자료, 2016.2.5.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대부광고 제보 중 동일한 건이어서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고, 그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아직 중지되지 않은 경우들을 골라 중지절차를 진행하게 됨

○ 시민감시단이 확대된 이후인 2015.8.1.~12.31. 기간의 경우 제보된 총 62,674건의 불법대부광고 중 3,884건에 대해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취해졌음

[표 5] 법 시행 이후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2016.4.30.)

(단위: 건)

| 월별/연도 | 2014 | 2015 | 2016 |
|---|---|---|---|
| 1월 | - | 659 | 558 |
| 2월 | - | 648 | 513 |
| 3월 | - | 978 | 1,374 |
| 4월 | - | 809 | 897 |
| 5월 | - | 373 | |
| 6월 | - | 625 | |
| 7월 | - | 1,008 | |
| 8월 | - | 738 | |
| 9월 | - | 949 | |
| 10월 | 930 | 837 | |
| 11월 | 1,196 | 800 | |
| 12월 | 704 | 560 | |
| 합계 | 2,830 | 8,984 | 3,342 |

주: 법 시행 이후 2014.10.15.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 번호중지 의뢰를 요청함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대부광고 접수 건수」, 국회 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7.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불법대부광고 적발활동이 이루어져, 불법대부광고의 적발 및 그에 이용된 전

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중지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게 되는 수단이 감소되므로, 불법대부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불법대부업 이용 감소 여부[10]

□ 설문조사 결과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2014년 약 62.1만 명에서 2015년 약 33만 명으로 감소[11]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대부광고 수단이 제한되면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이후 불법대부업 관련 설문조사는 2014년 7~8월과 2015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음

○ 2014년 7~8월에 실시된 '불법사금융[12]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약 61.5만 명이 총 5.3조 원의 불법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 설문조사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10) 불법대부업 규모나 이용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간헐적인 설문조사 등에 의한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3년 3~7월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대부업 이용 현황을 추정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전체 사금융 이용자수 및 시장규모 추정은 최근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증가 등에 따른 진실응답률 저하 및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사금융시장의 특성상 곤란하다는 전제를 두었음(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3.8.23.)

11)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국한할 경우 약 241,970명에서 75,170명으로 감소

12) 통상 불법사금융이라 하면 고금리대출, 불법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일반 상담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나, 이 설문조사에서는 '불법대부업'으로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

- 설문대상 중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89명(이용률 2.4%), 불법대부업 평균 이용액은 858만 원으로 나타났음
- 이를 2013년 경제활동인구[13]로 환산한 결과,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약 61.5만 명이며 시장규모는 5.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14]
- 불법대부업 이용자를 6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제한하여 계산할 경우, 2014년 말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인원이 10,082,065명으로 전체신용등급자의 23.8%이므로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약 241,970명, 시장규모는 약 2조 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15]

### [표 6] 불법대부업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응답 인원 | 불법사채 이용 인원 |
|---|---|---|
| 대부업체 이용 고객 | 1,363 | 59 |
| 민원 신청인 중 전화 설문 | 314 | 20 |
| 민원 신청인 중 메일 설문 | 2,000 | 10 |
| 총 계 | 3,677 | 89 |

자료: 심지홍,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2015 학술 세미나 자료집』, 소비자금융연구소, 2015.1.9.

13)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경제활동인구 중 20세 이상은 2,562만 4천명으로 집계됨. 이 경우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약 61.5만 명(= 2,562.4만×2.4%), 대출규모는 5.3조원(= 61.5만×858만원) 가량으로 계산됨(참고문헌에서는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3,883만 명으로 보아 불법대부업 이용자를 93만 명 가량, 대출규모를 8조원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자체적으로 계산·산출하였음)

14) 심지홍,「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2015 학술 세미나 자료집』, 소비자금융연구소, 2015.1.9., 한국대부금융협회,「“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 추정」보도자료, 2015.1.9.

15) (이용자 수) 약 241,970명 = 10,082,065명 × 2.4%, (이용금액) 약 2조 761억 원 = 241,970명 × 858만 원

[표 7] 불법대부업 이용 시기(복수응답)

(단위: 명, 개월)

| 구 분 | 응답수 | 이용자수/개월수 |
|---|---|---|
| 2002년 ~ 2007년 10월 | 11 | 0.183 |
| 2007년 11월 ~ 2010년 7월 | 19 | 0.613 |
| 2010년 8월 ~ 2011년 6월 | 18 | 1.636 |
| 2011년 7월 ~ 2014년 4월 | 30 | 0.882 |
| 2014년 5월 ~ 2014년 7월 | 12 | 4 |
| 계 | 90 | |

주: 상한금리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함

자료: 심지홍,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2015 학술 세미나 자료집』, 소비자금융연구소, 2015.1.9.

○ 이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5.6.3. ~ 6.23.에 실시한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2.1만 명이 총 7.1조 원의 불법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16)]

-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설문대상 중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41명(이용률 0.82%), 불법대부업 평균 이용액은 3,209만 원으로 나타났음
- 불법대부업 이용자를 6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제한하여 계산할 경우, 2015년 6월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인원이 9,167,066명으로 전체신용등급자의 20.9%이므로,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약 75,170명, 시장규모는 약 2조 4,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17)]

16) 한국대부금융협회, 「'33만 명이 10조 5천억원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 보도자료, 2015.7.6. 대부금융협회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 5월말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 3,984만 명을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약 33만 명이 10.5조원의 불법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를 2014년 설문조사와 같이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2015년 5월 기준) 2,694만 5천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약 22.1만 명(=2,694.5만×0.82%), 대출규모는 약 7.1조 원(=22.1만×3,209만 원)으로 추산됨

□ 반면, 불법대부업 이용금액은 2014년 5.3조 원에서 2015년 7.1조 원으로 늘어나[18] 1인당 이용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불법대부광고나 불법대부업 자체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국민들의 자금수요 증가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2012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의 제1, 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은행업권의 대출규모는 2012년 1분기 기준 453조 1,407억 원에서 2015년 2분기 기준 527조 2,296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은행의 대출 추이(분기별)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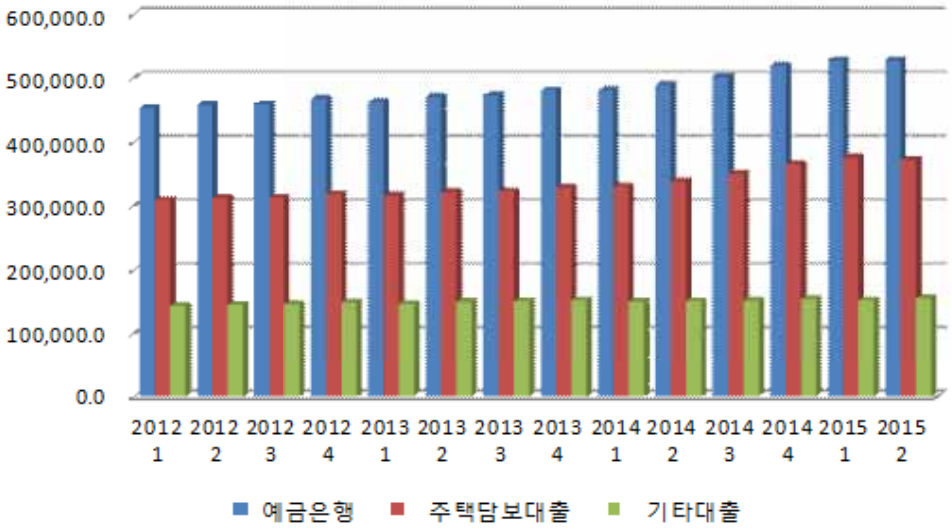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7) (이용자 수) 약 75.170명 = 9,167,066명 × 0.82%, (이용금액) 약 2조 4,122억 원 = 75,170명 × 3,209만 원

18)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국한할 경우 2조 761억 원에서 2조 4,122억 원으로 증가

-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제2금융권의 대출규모 역시 2012년 1분기 기준 183조 9,831억 원에서 2015년 2분기 기준 232조 7,18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추이(분기별)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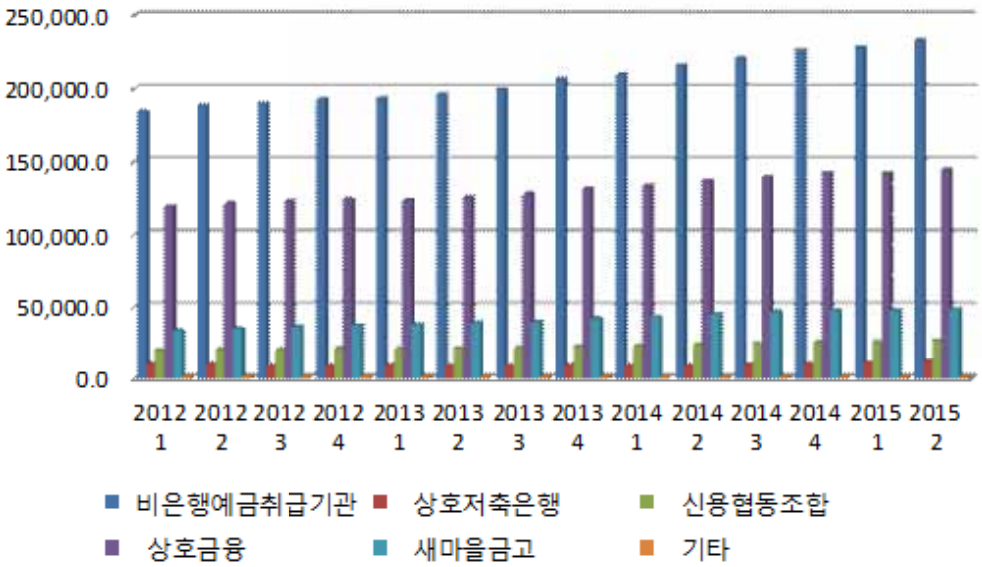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등록 대부업체의 전체 이용규모를 보면, 2012년 상반기에 252만 2천여 명이 8조 7,175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261만 4천여 명이 12조 3,401억 원을 대출하여, 이용자 수는 3.65%, 금액은 4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8] 등록 대부업체 이용규모 추이(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반기별)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 '12.6말 | '12.12말 | '13.6말 | '13.12말 | '14.6말 | '14.12말 | '15.6말 |
|---|---|---|---|---|---|---|---|
| 법 인 | 82,276<br>(236.6) | 81,954<br>(235.6) | 87,316<br>(233.8) | 95,050<br>(233.9) | 103,461<br>(241.2) | 105,733<br>(234.7) | 117,435<br>(246.7) |
| 자산 100억원 이상 | 76,528<br>(230.1) | 75,845<br>(228.0) | 80,543<br>(226.9) | 88,604<br>(226.4) | 97,198<br>(233.7) | 99,254<br>(227.3) | 109,623<br>(237.6) |
| 자산 100억원 미만 | 5,748<br>(6.5) | 6,109<br>(7.6) | 6,773<br>(6.9) | 6,446<br>(7.5) | 6,263<br>(7.5) | 6,479<br>(7.4) | 7,812<br>(9.1) |
| 개 인 | 4,899<br>(15.6) | 4,949<br>(15.0) | 4,477<br>(14.9) | 5,110<br>(14.7) | 5,498<br>(14.3) | 5,859<br>(14.6) | 5,966<br>(14.7) |
| 합 계 | 87,175<br>(252.2) | 86,904<br>(250.6) | 91,793<br>(248.7) | 100,160<br>(248.6) | 108,959<br>(255.5) | 111,592<br>(249.3) | 123,401<br>(261.4)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리

○ 가계부채는 통상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여기에 불법대부업 이용규모는 포함되지 않고, 심지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규모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과 각 업권별 대출 증가율 및 불법대부업 이용 증가율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다만,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려는 계층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다른 금융업권에 흡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와 제도권 금융 대출 실적의 증가 현황을 통해 서민층의 자금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불법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었지만 이용금액이 늘어난 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불법대부업 이용금액이 증가하였다 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임

##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1) 불법대부업에의 접근 차단

□ 2014년 실시된 불법사금융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불법사채업자를 알게 된 경로'에 따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가 전체의 29.8%, 스팸메일 및 전화가 19%, 생활정보지가 17.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킴으로써 불법대부업자와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는 앞서 보았던 불법대부업 이용자 통계에서, 이용자 수 자체가 감소할 수 있었던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표 9] 불법대부업자를 알게 된 경로(2014년 7월~8월)

(단위: 명, %)

| 구분 | 생활정보지 | 스팸메일 및 전화 | 전단지 및 명함 광고 | 지인 소개 | 중개업자 소개 | 계 |
|---|---|---|---|---|---|---|
| 응답수(%) | 15(17.8) | 16(19.0) | 25(29.8) | 24(28.6) | 4(4.8) | 84(100) |

자료: 심지홍,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2015 학술 세미나 자료집』, 소비자금융연구소, 2015.1.9.

□ 그러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중지기간 이후에 해당 번호를 다시 불법대부업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개설되었지만 실질 사용자는 불법대부광고자일 경우가 있어, 전화번호 중지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2.6. ~2015.5.31.까지 1년 4개월 동안 적발되어 중지 요청된 전화번호 14,926건 중에서 다시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적발되어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511건에 달하였음[19)]

- 중지기간(90일) 경과 후 지인명의로 재가입하여 동일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 건수보다 실제 재사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표 10] 전화번호 이용 중복중지 현황

(단위: 건, %)

| 연 도 | 구 분 | | | | 중복중지 비율(b/a) |
|---|---|---|---|---|---|
| | 1차 중지(a) | 2차 중지 | 3차 중지 | 중복중지 계 (b) | |
| 2014 | 11,478 | 298 | 3 | 301 | 2.6 |
| 2015 | 3,448 | 204 | 6 | 210 | 6.1 |
| 계 | 14,926 | 502 | 9 | 511 | 3.4 |

자료: 금융감독원,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511개) 적발!」 보도자료, 2015.6.9.

□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동일한지,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비밀보호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자료에 해당되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20)]

○ 따라서 전화번호 중지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하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고, 다만,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용중지 요청이 오는 경우에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21)]

○ 이용중지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동일 건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제보를 받거나 재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역시 동일 건에 대해 여

19) 금융감독원,「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511개) 적발!」 보도자료, 2015.6.9.

20) 미래창조과학부,「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6.

21) 미래창조과학부,「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6.

러 행정기관이 중복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지기간 종료 후 재사용 여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자료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 검찰, 기타 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2016년 7월에 시행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중지될 전화번호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2) 중지기간의 적정성 및 근거의 명확성 여부

□ 현재 전화번호 중지는 90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22] 이 중지기간과 중지조치 여부가 각 통신사의 약관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지기간 90일은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중지기간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약관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됨

○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2항의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중지조치를 통신사의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점에 부합하지 않음

22) 전화번호 중지기간 90일이 종료되면, 실무상 추가적으로 보호기간 한 달을 두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총 4개월) -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구두답변(☎02-2110-1948)

[표 11] 각 통신사별 이용중지 관련 약관 내용

| 통신사 | 이용중지 관련 내용 |
|---|---|
| SKT | 제17조(이용정지)<br>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하 생략).<br>10.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br>② 회사는 제3장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u>이용정지 2일 이내에</u>(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br>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
| KT |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br>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br>10.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br>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

| 통신사 | 이용중지 관련 내용 |
|---|---|
| |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br>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br>⑥ 제65조 ①항 1호~5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 LG U+ | 제15조(이용정지)<br>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br>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br>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br>1. 제1항 제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br>**2. 제14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는 <u>이용정지 2일 이내에</u>(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br>③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제14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br>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br>2. 제15조제1항제15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각 통신사 약관 참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지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문과 부합하도록 각 통신사의 약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화번호 중지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3개월보다 긴 기간을 책정하고 중지기간의 하한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지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하려는 노력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 중임[23)]

○ 다만, 전화번호가 국가공용재산이며 번호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한 중지기간을 정해야 할 것임

## 4. 사회 · 문화 영향분석

### 가. 미디어환경(통신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1) 문제점

□ 현재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해당 전화번호 이외에 새로 전화 개설을 신청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아, 불법대부업자가 중지된 기존 번호 대신 새로 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이용신청이 제한되거나 승낙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며, 포함하고 있더라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23) 금융감독원,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 적발!」 보도자료, 2015.6.8.

- SKT의 경우 정보통신상거래 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음
  - ◆ 정보통신상거래 질서문란행위에는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불법스팸 전송이 포함되어 있으나,[24] 불법대부광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KT의 경우 정보통신상거래 질서문란자(SKT와 동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으며, 이용신청일 포함 1년 이내에 스팸발송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이력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 LG U+의 경우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어 이용중지요청을 받은 전화번호 명의인이 새로 이용신청을 할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2] 각 통신사별 약관 중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관련 내용

| 구분 | 통신사 |
|---|---|
| SKT |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br>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br>4.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br>5.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br>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24) 약관 [별표 3] 정보통신상거래 질서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 구분 | 통신사 |
|---|---|
|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KT |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br>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br>6.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br>7.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자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br>8. **외국인이 2회선(선불1, 후불1)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br>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br>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br>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br>④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br>1.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포자 포함)<br>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 LG U+ |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br>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 구분 | 통신사 |
|---|---|
| | 7. **개인명의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자이면서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등) 충족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br>8. **선 후불 포함하여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려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상장법인 및 특수법인이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승인받은 경우) 충족시는 4회선을 초과하여도 법인명의로 개통가능.<br>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br>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br>③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br>1. **제17조제5항**제9호,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br><br>제17조(계약의 해지)<br>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br>10. **제15조**[25]**제1항** 제7호,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br><br>제15조(이용정지)<br>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br>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자료: 각 통신사 약관

25) 약관에서는 제14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상 제15조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또한,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불법대부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 외에 다른 여러 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현재는 한 사람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번호의 개수와 관련하여 각 통신사별 약관에서 3~4회선 정도로 제한하고 있음([표 12] 참고)

○ 그러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추가 개통이 가능하여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일정 횟수 이상 번호를 개설하더라도 개설절차가 달라지지 않아 불법대부광고를 하기 위한 추가개통이 어렵지 않음

○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절차는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및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 ② 신용조회(NICE) → ③ 부정행위 및 연체확인(KAIT[26]) → ④ 개통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27]

- KAIT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임
- KAIT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집중에는 이동전화(알뜰폰사업자 포함), 전화·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IPTV, 케이블 TV) 등 57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

2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27) 미래창조과학부, 「불법대부 광고 번호정지 관련 추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31.

[표 13] KAIT의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 범위

| 종 류 | | 정보범위 |
|---|---|---|
| 식별정보 | 개인 | o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기업/법인 | o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
| 신용도 판단정보 | | o 서비스 요금 등의 연체 사실 ⇨ 연체정보<br>o 서비스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직권정지<br>o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불법스팸정보 |
| 신용거래 정보 | | o 가입 현황<br>o 가입 개설 및 해지사실 ⇨ 단기간다회선 개통정보 |
| 공공정보 | | o 불법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 정보 ⇨ 불법스팸과태료(중관소)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주요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6.1.

- 현재 KAIT가 확인하고 있는 '부정행위'에는 불법스팸 발송행위가 포함되며, 불법스팸정보는 신용도 판단정보로서 상거래질서 문란정보에 해당함

◆ 이동통신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된 이동전화 제한 요청을 받아 이용정지·해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스패머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KAIT에 등록하게 됨

◆ 이동통신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불법스패머에 대해서는 각 사별 선불폰 1회선만 허용하고 있음

[그림 5] 불법스팸정보 공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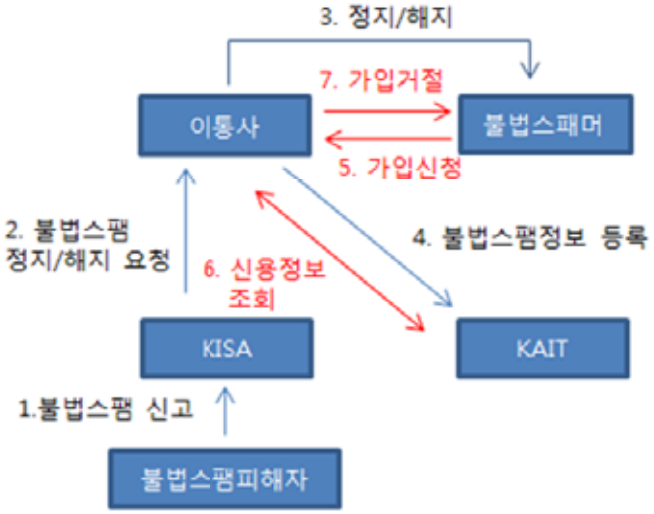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주요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6.1.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이용자에게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전화번호가 실제 중지되기 전 기간 동안에 번호이동[28]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용중지가 통신사별로 이루어지고, 실제 중지조치까지 약 3~4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 사이의 기간에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후에는 중지조치를 할 수 없게 됨

- 또한, 수사기관 등도 불법대부광고의 제보를 받고 실제 해당 전화번호로

28)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불법대부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화번호 이용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불법대부광고자가 전화번호 중지 가능성을 인식하고 미리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전화번호 중지 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다거나 수사기관 등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련되었거나 하는 사유로는 번호이동이 제한되지 않음

- 현재 각 통신사별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번호이동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SKT 제36조, KT 제31조, LG U+ 제32조)

  ◆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체납자

  ◆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2009.8.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 (2) 개선방안

□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를 제한하게 되면, 한 번호가 정지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다른 번호로 불법대부광고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업무상 동일명의로 여러 전화를 개설하거나 가족들끼리 하나의 명의로 개설하여 여러 번호를 쓰는 등의 범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으므로, 부처에서 의심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통신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대부업자의 번호개설을 어렵게 하기 위해 KAIT가 확인하는 '부정행위'에 불법대부광고 행위를 포함시키고 상거래질서 문란정보로 수집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거래질서 문란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전화번호 개설절차를 엄격히 하거나 번호 개설에 시간적 간격을 두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대부업자가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변경된 통신사에 다시 중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번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전화번호의 명의인을 추적하는 것은 통신자료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제공요청에 제약을 받으므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불법대부광고를 막기 위한 것과 현재 통신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수사기관의 경우 제83조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29]의 범죄 중 전화, 인터

2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음

## 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1) 분석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자료 제공조치의 대상으로 보호되고 있음

○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해당됨(동조제3항)

---

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통신자료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을 뿐(전기통신사업자의 제공의무는 없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사항임(동조제3항)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전화번호가 동일한 명의인에 의해 재사용되거나 통신사를 바꾸어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제한하기 어려움

○ 단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라는 이유만으로 관련부처나 통신사 간의 정보공유는 불가능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조문으로서,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해 명의인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화번호 명의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이로 인해 불법대부업자가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전화번호를 재사용하거나, 중지조치 이전에 번호이동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한계가 야기됨

□ 결국,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면, 해당 명의인을 적발하거나 전화사용을 제한하기 어려워 중지제도의 효과가 한정적이게 됨

### (2) 개선방안

□ 기존 명의인이 전화번호 중지기간 이후 동일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지조치 전 번호이동 후에도 다시 중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정보요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취지상, 정보요구주체의 확대가 개인정보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지조치 이전에 번호이동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 전 명의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동 후 통신사에게 중지명령을 하도록 요청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최근 대법원에서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6.3.10.선고 2012다105482 판결)

-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제4항[30]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음[31]

30) 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제4항

- 이 대법원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법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32]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31)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음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②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다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그 제공방법과 절차를 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③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라는 서면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는 그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주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 비하여 통신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되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이용자의 인적 사항이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 이루어져야 함

32) <판결요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3.22.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 甲회사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것임

○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번호이동 되더라도 이동 후 통신사에게 해당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가능할 것임

○ 현행법상 정보요구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명의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효과를 지금보다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정보요구주체의 확대는 불법대부광고, 나아가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요구와 사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임

- 참고로 형사처벌 정도를 비교해보면, 불법대부광고의 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대부업

---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甲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乙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乙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그 법익침해와 관련한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므로, 甲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제19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제1호), 형사처벌의 상한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또한, 7.28일부터 중지대상에 포함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대포통장 등의 거래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따라 방지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금융사고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보요구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명의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수사기관보다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위 대법원 판결이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권한남용,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게까지 정보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 다른 법령에 의한 정보요청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므로, 정보요구주체를 확대하더라도 개정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명의인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전화번호 중지조치 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의 제공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의 정보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14] 제19대 국회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개정 관련 법률안

| 발의일자<br>대표발의<br>의원(의안번호) | 개정 내용 | 비고 |
|---|---|---|
| 2012.10.30.<br>강창일 의원<br>(의안번호<br>1902332) | 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영장주의에 준하여 이용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제3항).<br>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3조제8항 및 제10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3.1.15.<br>이만우 의원<br>(의안번호<br>1903328) | 경찰 및 검찰, 군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 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4항)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3.5.15.<br>변재일 의원<br>(의안번호<br>1904976) | 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통신자료요청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3항)<br>나. 통신자료요청자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개인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83조제7항)<br>다. 통신자료요청자가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개인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7조제8호 신설)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4.12.8.<br>임수경 의원<br>(의안번호<br>1912876) |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4.12.9.<br>정청래 의원<br>(의안번호<br>1913009) |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3조 등) | 임기<br>만료<br>폐기 |

| 발의일자<br>대표발의<br>의원(의안번호) | 개정 내용 | 비고 |
|---|---|---|
| 2015.2.27.<br>김광진 의원<br>(의안번호<br>1914076) |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함(안 제83조, 제104조 삭제)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5.5.14.<br>김한길 의원<br>(의안번호<br>1915137)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제공기관 및 요청사유별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보고받는 내용을 점검하여 이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기관·요청사유 및 범위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등)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5.8.4.<br>황인자 의원<br>(의안번호<br>1916307) | 통신자료 제공대상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전기통신 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83조제3항)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5.8.21.<br>전해철 의원<br>(의안번호<br>1916522) |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94조제5호, 제104조제5항제13호·제14호 삭제)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5.11.16.<br>유승희 의원<br>(의안번호<br>1917752) |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 임기<br>만료<br>폐기 |
| 2015.11.17.<br>서상기 의원<br>(의안번호<br>1917771) | 가. 현행 통신자료요청 주체에서 법원과 국세청 및 지방의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7항).<br>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83조제4항)<br>다.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3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 임기<br>만료<br>폐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적용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자료가 제공된 후에 자료 대상인 개인에게 자료제공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음

- 영장주의나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영장주의를 적용할 경우 범죄수사를 지연시켜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33)]

- 자료 대상인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정보 수집 및 용의자 신원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의 통지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음[34)]

□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통신사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 달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사항임

○ 따라서 정보주체인 명의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다른 통신사에게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개인정보 보

3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창일의원 대표발의(2012.10.30.)), 2013.6.

3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한길의원 대표발의(2015.5.14.)), 2015.6.

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위 내용들을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에 기입하여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가입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사전 동의를 받고 공유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면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기존 중지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즉, 수사기관 등이 제보를 받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인에게 사실 확인을 한 이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중지조치 전에 사전 안내를 한 이후 실제 전화번호가 중지되기 전에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통신사 간에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기존 통신사에서 중지조치가 취해진 사실 등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임

## 5. 규제영향분석: 규제의 신설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 것은, 불법대부업을 적발하기 전 과정에서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되는 수단을 제한하고 해당 수단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신설한 것임

□ 이러한 규제의 신설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해 이용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게 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를 불법대부광고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불법사채업자를 알게 된 경로'를 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 '스팸메일 및 전화'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인 소개'**가 높은 비중(28.6%)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금융당국은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여 무등록 대부업체가 금융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임[35)]

□ 한편, 전화번호 중지라는 규제의 신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물론, 전화번호 중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전화 또는 메시지의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함[36)]
  - ◆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제출해야 함[37)]

35) 금융감독원,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키로!」 보도자료, 2016.4.25.

3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제2항

37)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

◆ ①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② 이의신청의 사유, ③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38)]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함[39)]

○ 최근 3년간 번호 중지된 건과 중지가 해제된 건의 현황은 다음 [표 16]와 같으며, 2014년에는 중지된 건 중 0.9% 가량, 2015년에는 1.36% 가량, 2016년 상반기에는 2.82% 가량이 해제되었음[40)]

[표 15] 최근 3년간 번호중지 처리 건수

(단위: 건)

| 구 분 | 2014 (10.15~12.31) | 2015 (1.1~12.31) | 2016 (1.1.~5.25) | 합 계 |
|---|---|---|---|---|
| 역무 제한 | 3,507 | 10,881 | 4,675 | 19,063 |
| 중지 해제 | 31(0.9%) | 148(1.36%) | 132(2.82%) | 311(1.63%)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불법대부 광고 번호정지 관련 추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31.

38)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제3항

39)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제5항

40) 금융감독원에 중지요청이 의뢰된 경우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으로 인해 중지가 해제되는 경우의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계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함

- 중지가 해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해제조치의 경우 중지조치보다 단시간(대부분의 경우 바로 처리)이 소요되고 있음[41)]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로는, 제보 당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고 있던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중지조치 이전에 선의의 제3자로 변경되었거나, 실제 등록 대부업체의 전화번호가 오용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선의의 제3자인 명의인은 중지대상인 전화번호가 실제 불법대부업 광고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대부업 등록증, 불법대부광고 제보접수일 이후 신규 전화번호 가입이 증명되는 전화가입확인서, 타직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해야 함

- 그러나 명의인에 따라 단시간의 이용중지라도 업무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중지요청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6. 부패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 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41)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구두답변(☎02-2110-1948)

# Ⅴ. 결론

□ 분석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불법대부광고 적발 및 그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꾸준히 중지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불법대부업 이용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불법대부업 뿐만 아니라 은행, 비은행, 대부업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대출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업을 접하게 되는 수단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광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번호 중지제도에 의해 불법대부업에의 접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전화번호를 불법대부업자나 그 지인이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중지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는 점, 90일의 중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중지조치가 통신사 약관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약관에서 중지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중지기간의 하한을 현행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전화번호의 개설이나 개설 횟수, 번호이동 등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인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대부업자가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를 할 수 있음

○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개수에도 큰 제한이 없으며, 전화번호 중지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중지조치를 할 수 없게 됨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한 정보는 통신비밀로 보호되고 있어, 불법대부업자인 명의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번호를 개설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이력이 있는 명의인은 일정 기간이라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횟수 이상 전화를 개설하는 자에게 보다 엄격한 절차나 시간적 간격을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지조치가 취해진 번호가 이동된 경우를 번호이동 제한사유에 포함시키거나, 통신사가 변경되더라도 중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관 등이 명의인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정보요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통신사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대부광고, 향후에 포함될 전기통신금융사기, 접근매체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 정보요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비밀 대상으로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통신사 간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되는 수단을 제한하고 해당 수단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신설한 것임

○ 이로 인해 불법대부업에 접근하는 이용자 수를 감소시키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한 광고뿐만 아니라 지인, 대부중개업체 등의 소개로 불법대부업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전화번호가 중지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므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중지요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 고 문 헌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14.2.24., pp.30~33.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2014.2.25., p.3.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2014.2.25., p.2.

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2014.2.28., pp.11~12.

국회사무처, 『제324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14.4.30., pp.21~25.

국회사무처, 『제329회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2014.9.30., pp.14~15.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3.8.26.

금융감독원,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511개) 적발!」 보도자료, 2015.6.9.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보도자료, 2016.4.5.

금융감독원,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키로!」 보도자료, 2016.4.25.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대부광고 접수 건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7.

금융감독원,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 적발!」 보도자료, 2015.6.8.

금융감독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전국 방방곡곡에서 눈부신 활약!」 보도자료, 2016.2.5.

금융위원회,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4.1.26.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확정 추진」 보도자료, 2014.7.16.

미래창조과학부,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26.

미래창조과학부, 「불법대부 광고 번호정지 관련 추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5.3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주요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6.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창일의원 대표발의(2012.10.30.)), 2013.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한길의원 대표발의(2015.5.14.)), 2015.6.

박덕배,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 제도권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해야-」, 『현안과 과제』 14-3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10.8.

서정주,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 국내외 현황」, 『KB daily 지식 비타민』 13-59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5.15.

심지홍,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2015 학술 세미나 자료집』, 소비자금융연구소, 2015.1.9.

한국금융연구원,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11.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6.5.30.

한국대부금융협회, 「'33만명이 10조 5천억원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 보도자료, 2015.7.6.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2016.

LG U+,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이용약관』, 2016.

SKT, 『WCDMA 이용약관』, 20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NICE 평가정보(http://www.niceinfo.co.kr)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7호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06.24. | 김진수 |
| 제6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1. | 황현영 |
| 제5호 |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0. | 유제범 |
| 제4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29. | 유웅조 |
| 제3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원시연<br>장경석 |
|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한인상 |
| 제1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김 준 |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8호


| | |
|---|---|
| 발 간 일 | 2016년 6월 30일 |
| 발 행 | 임성호 |
| 편 집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
|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br>TEL 02 · 788 · 4580 |
|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465-9355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01397-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 제 · 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465-9355